

1972. 9. 5.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보

차 례

이 영구보존 되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간행하였음.
1972. 3. 15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 조 례
 - 제 723 호 장관소유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 3
 - 제 724 호 외국인에 대한 유증음식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3
 - 제 725 호 서울특별시 취득세 불균일과세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 3
- ◎ 공 고
 - 제 195 호 주거구역 지정..... 3
 - 제 196 호 개발제한구역 및 풍치지구 결정..... 4
- ◎ 사 령..... 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장관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9월 4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23 호

장관소유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

장관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사고로 인하여" 다음에 "보수를 하여도"를 삽입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이 조례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9월 4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24 호

외국인에대한유흥음식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이 조례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취득세불균일과세조례폐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9월 4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25 호

서울특별시취득세불균일과세
조례 폐지에 관한조례

1967년 5월 24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 476호 서울특별시취득세불균일과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 195 호

주거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주거구역(건축법 제39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 지정을 건축법 제3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

축과 및 각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2. 9. 2.
서울특별시장

주거지역 지정 조서 (도면별첨)

구분	구역별	주거지역면적	주거지역중 주거구역면적	비고
1	종로구역	3.34	3.34	
2	중구구역	1.32	1.32	
3	동대문구역	18.85	17.10	
4	성동구역	91.26	55.69	
5	성북구역	47.68	41.54	
6	서대문구역	28.45	26.25	
7	마포구역	6.60	6.60	
8	용산구역	12.08	12.08	
9	영등포구역	77.42	53.03	
	계	287.00	216.95	

1. 위 지정된 주거구역안에서의 공지 비율은 10분의 6이내임.
2. 주거구역이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지구에 저축될 때에는 지구의 제한 규정에 따른다.
3. 주거구역중 추후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 변경이 있을시는 주거구역저용 규정을 배제한다.

1. 당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풍치지구가 건설부고시제 385 호 (72.8.25) 로 결정고시되었음으로 도시계획법 제12 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96 호

개발제한구역및 풍치지구결정

1972. 9. 2.

서울특별시장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시 영등포구, 성동구 일부	129.00	
변 경	상 동	152.80	

나. 풍치지구 결정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시흥지구	서울시영등포구시흥동	900,000	
"	은수지구	" " 은수, 오류, 궁동	1,900,000	
"	오정지구	경기도부천군오정면	2,750,000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

획과 및 내무국 시민과 관할구청 시
민봉사실에 보관.

사 령

◎ 1972. 9. 1.

아파트관리과 기한부공무원 정 현 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계획국 서무과 지방행정사무관 백 우 선
(관리계장)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
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물동경제과 지방기제지원 이 문 영
상정과 근무를 명함

관리제 1과 지방기제지원 김 인 석
건설행정과 근무를 명함

관리제 1과 기한부공무원 최 우 희
건설행정과 근무를 명함

관리 2 과 지방토목기사보 신 동 우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교통연구단 지방토목기사보 박 영 균
시정개발담당관 근무를 명함

경기도인천시 지방행정사무관 정 만 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입함
7 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교학과 운영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 1972. 9. 2.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부 삼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 호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함
서대문병원 지방약무가원보 도 경 란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아 동 병 원 지방약무기원보 이 명 숙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단 속 과 지방행정주사보 신 태 식
동원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김 은 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아동보호소 지방행정주사 정 운 봉
영등포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 1972. 9. 4.

영등포수원지 지방행정주사 이 인 형
사 무 소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 정 도 영
성북구 근무를 명함

아동보호소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